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가단2007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17.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5/100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7.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9. 접수 제1080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5/100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7.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0. 7. 9. 접수 제1040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3. 'C은 원고에게 59,467,382원 및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5,920,219원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전28966호), 위 지급명령은 2019. 12. 21. 확정되었다.

나. C은 2020. 7. 8. 피고(2018. 2. 16. 사망한 동생 D의 처)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자신 소유 각 5/10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나, 이 사건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의 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모두 피고가 사망한 남편 D의 사망보험금과 회사위로금, 시어머니로부터의 재산분할금 등으로 부담하였는데, 시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혼자된 며느리(피고)의 생활력을 믿지 못하여 시아주버니인 C에게 두 어린 아들의 성년 후견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여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5% 지분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분은 본래 피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일응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피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부동산 전체를 피고의 돈으로 취득하였어야 하는데, 피고 자신의 주장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매매대금, 피고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위로금의 수액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갑 제5, 6호증)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분은 C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명욱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F아파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G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4층 3551.78㎡, 지3층 4228.6㎡, 지2층 4249.73㎡, 지1층 3707.93㎡,

1층 2746.67㎡, 2층 1269.29㎡, 3층 내지 11층 각 1412.31㎡,

12층 1266.46㎡, 13, 14층 각 1238,49㎡,

15층 1210.53㎡, 16층 988.17㎡, 17층 585.8㎡, 18층 411.91㎡,

19층 408.9㎡, 20층 98.58㎡, 옥탑1층 102.72(연면적제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9.84㎡

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건물 K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지붕 21층 업무시설

1층 69.62㎡, 2층 47.26㎡, 3층 69.76㎡, 4층 내지 21층 각 391.48㎡,

옥탑2층 48.14㎡ (연면적제외), 옥탑1층 34.37㎡ (연면적제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덕양구 I 대 370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0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9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704분의 7.76 끝.